

# 노·사 자율안전보건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다.

## 제1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 1. 설치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 설치대상

#### 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항~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 나. 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규모(시행령 제25조)

- (1)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

#### 유해·위험 업종(시행규칙 제25조)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 화학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노사협의회의 설치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위원회의 구성

#### 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나. 구성

(1) 원칙 -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 10인 이내, 사용자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 ※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사용자위원 구성인원이 차이가 있고, 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위원 최소 3인 이상, 근로자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위원회 인원이 10인 이상의 경우에도 노·사 위원수는 동수로 구성

(2) 근로자 위원

- ①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 말한다.(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함)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자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불이행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사용자 위원

- ① 사업의 대표자 -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 ② 안전관리자 1인 -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③ 보건관리자 1인 -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④ 산업보건의 - 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부서를 말한다.

※ 회사내 선임한 안전·보건담당자(총무부서)를 포함  
 ※ 사용자 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구성의 예외 - 건설업(공사)의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건설업은 위에서 말한 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달리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 ※ 근로자대표는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 ※ 협의체에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등 동수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1) 1,0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활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 근로자대표와 ㉡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이 포함되어 있고 ▲ 사용자위원회 ㉔ 안전관리자 및 ㉕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㉑ 내지 ㉕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㉑ 내지 ㉕을 각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 포함시키고,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형태〉

대상	범위	구성 형태
일반업종	1,0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운영 또는 노사협의회로 같음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또는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2) 법적 근거 : 법 제19조 제2항

①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 1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 31조)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법 제42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43조)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제16조)

② 심의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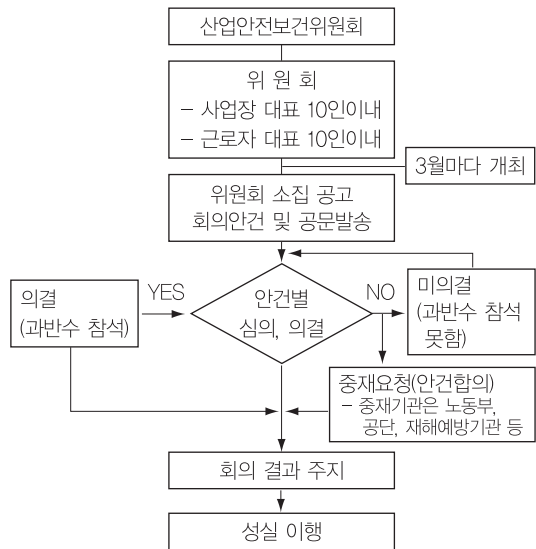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0조)

4. 회의 운영

가. 법적 근거

법 제19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이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

25조의3)

**다. 회의 등**

(1)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2)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3)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25조의4 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1회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시행령 제25조의4 제4항)

- ① 개최일시 및 장소
- ② 출석위원
-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④ 기타 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

**마.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근로자위원 및 사

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

※ 제3자 중재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회의결과 등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25조의6)

**사례 1 – LG Carrier**  
[자동차판매기(자판기), 산업용 냉동창고 등 제조업]

**1. 안전보건 경영 방침**

LG Carrier는 안전·환경 및 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며, 전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 체계적인 환경·보건 및 안전 개선을 위해 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운용한다.

(2) 제품의 기획, 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 생산, 판매, 서비스 및 최종 폐기단계까지 환경·보건 및 안전을 고려한 자원 이용,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4) 사업장의 주기적인 감사 실시를 통해 환경·보건 및 안전 성과를 측정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5) 임직원의 환경·보건 및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 및 가족의 환경·보건 및 안전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장려한다.

(6) 환경·보건 및 안전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7) 환경·보건 및 안전관련 국내외 법규와 규정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2. 조직 및 감독 체계

### ◆ EH&S (Environment, Health & Safety)

#### 가. EH&S 감독위원회

(1) 경영검토(Management Review) 및 EH&S 감독위원회 운영

분기별로 EH&S 감독위원회(EH&S Oversight Committee : EH&S OSC)를 통해 실시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EH&S OSC는 LG Carrier의 EH&S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및 인적 자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EH&S 관련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 EH&S OSC

최고경영자가 의장이 되며, 경영자 대리인, 생산부서장, 설계부서장, 구매부서장, 품질관리부서장, 생산관리부서장, EH&S Coordinator, EH&S Staff,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 ◀ EH&S Coordinator는 EH&S OSC에서 자문 및 조연자 역할을 담당한다.
- ◀ EH&S OSC 개최는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하고 회의록은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 EH&S Coordinator는 의장의 기술 고문역할을 수행하며, 매 회의마다 협의사항 준비를 담당한다.

EH&S OSC는 의장의 결정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분기별 EH&S 성과 : 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TRIR), Lost Workday Incident Rate(LWIR) and Lost Workday Severity Rate(LWSR), 유해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대기 배출물질
2. 이전 회의에서의 활동항목 완료 여부
3. 인간공학 및 개인보호장구(PPE)의 이행상태
4. 사고조사
5. 감사
6. 검사
7. 종업원에 의해 파악된 EH&S 관심사항, 작업자가 직면한 EH&S 문제 또는 기타 비일상적인 주요 문제의 발생
8.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적,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
9. 연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계획, 의사소통계획, 프로그램 평가 및 계획의 실행상태 감시
10. EH&S 확인심사(Assurance Review) 보고서에 대해 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
11.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구사항 또는 문제 발생의 변화에 대한 기록 검토


EH&S OSC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인간공학평가팀을 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사측과 노측 동수로 구성되며, 안전보건사항에 대하여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헌장(Industrial Safety & Health Sub-committee Ch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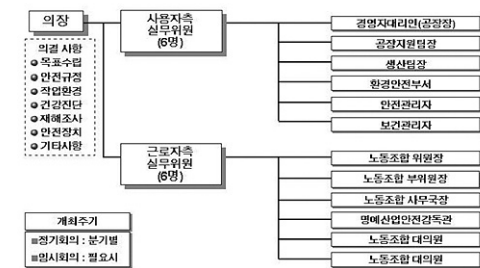
- ① 목적 : 종업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지도 및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수립 등 관계법령과 본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사항을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②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측 실무위원과 근로자측 실무위원 각 11인 이내로 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 ③ 의장 :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회의 주기 : 분기 1회 이상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경영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 관련 제반사항
- ⑥ 정족수 : 사용자측 실무위원과 근로자측 실무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회의공개 :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달방법은 의사소통계획에 따른다.
- ⑧ 기록 및 보관 : 회의록 및 운영사항은 5년간 보존한다.

- 사고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한 경향분석 검토
- 사업장 인간공학 평가(유해요인조사)
- 인간공학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해결책의 개발, 커뮤니케이션 및 실행
- 시정조치의 유효성 검토
- 조직 전체에 성공한 실천 사례 및 해결책 전파
- EH&S OSC에 충분한 인적,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는 보고 및 진행 현황
- 규칙적인 검토 및 평가
  - 우선순위가 부여된 개선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
  - 인간공학문제로 인한 사고 또는 불만 사항
  - 어떤 새로운 문제 또는 제기된 관심사항

⑥ 기록 및 보관 : 회의록 및 운영사항은 5년간 보존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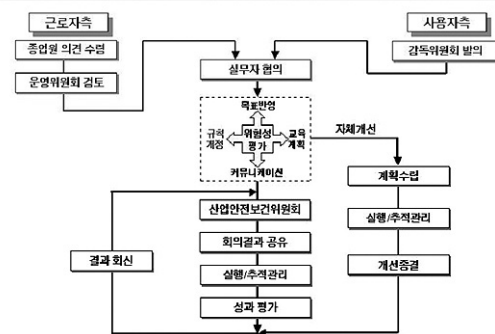


(3) 인간공학평가팀 현장(Ergonomic Assessment Team Charter)

- ① 목적 : 인간공학 프로그램에 따라 사내의 인간공학 위험을 제거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② 구성 : EH&S Coordinator(환경안전부서장), Production Eng. Mgr.(생산부서장), Quality Mgr.(품질관리부서장), Prod. Planning Mgr.(생산관리부서장), R&D Eng. Mgr.(연구소부서장), Safety Engineer(안전관리자 및 부서별 EH&S 담당자), Nurse(보건관리자) 및 노동조합 관련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③ 의장 : EH&S Coordinator
- ④ 회의 주기 : 분기 1회
- ⑤ 인간공학평가팀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절차



(출처 : 노동부 www.molab.go.kr)